

| |
|-----------------|
| 등 록 번 호 |
| 여성인권-단행본-2019-3 |

평등을 일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서

차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서

I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 1.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노출의 심각성 8
- 2.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중요성 12
- 3.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15

II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

-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제도 20
- 2. 비밀전학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24
- 3.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26
- 4.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제도 30

III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 1.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는 법적 의무입니다. 36

부록

- 붙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38
- 붙임. 관련 법령 39

본 안내서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서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전국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례, 신문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피해자의 신변 노출 방지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노출은 피해를 지속·강화하며, 피해자의 일상은 파괴되고 회복은 지연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끈질기게 피해자의 일상활동이 이뤄지는 시공간(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자녀의 학교나 학원, 그 밖의 SNS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폭력을 지속합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피해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과 신체화 반응, 잦은 주거지 이전과 자녀 전학 등으로 인한 삶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적으로 요구되며, 개인정보 보호는 배려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이미 공개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적 처벌의 대상의 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2차 피해를 일으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와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무심코 한 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서적 폭력과 통제도 심각한 가정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피해를 축소하거나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통제'는 가해자가 원하는 행동을 강요하기 위해 피해자의 모든 일상에 관여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화 통화나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감시하고, 친구나 가족 등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 | |
|--------|--|
| 신체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때리기, 목 조르기, 머리채 잡기, 칼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등 |
| 정서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욕설, 폭언, 비난, 무시하기 근거 없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괴롭히는 행위 피해자가 아끼는 물건을 부수는 행위 원가족(처가 등) 비난과 위협 행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애완동물을 학대 |
| 경제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을 강요하거나 심하게 제지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행위 피해자의 모든 지출을 통제하거나 월급, 생활비를 가로채는 행위 |
| 성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피임·임신·출산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 통제와 억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제지하는 행위 GP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위치추적이나 영상통화, 전화 또는 개인 메일 확인 등의 감시 외부와의 고립, 사회적 관계들을 차단하거나 단절시키는 행위 |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제도

처리기관

- 초·중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 교육청
- ※ 타 시도 전학 시 전입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만 접수 가능

제출서류

- 학교장 의견서(담임교사가 서명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가정폭력 피해자 증빙서류(택일)
 -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 지자체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지자체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침 확인 필요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신청기관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제한, 해제) 신청서(필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필수)

3.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제도

첨부서류(택일)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사실·입소확인서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실확인서

입증자료

-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진단서도 가능)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
- 임시보호명령결정서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등·초본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3.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제도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택일)

| 구분 | 입증자료 | 발급기관 |
|----------|---------------------------------|--|
| 가정폭력 피해자 | ·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1366 |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
| | ·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 |
| | · 진단서, 진료기록 | · 진료병원 |
| | · 수사기관 사건(고소, 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 · 해당 수사기관(검찰, 경찰) |
| | · 판결문, 공판기록 | · 법원 |

※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진단서도 가능

-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서

I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1.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노출의 심각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는 피해가 지속,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가. 피해자 신변 노출은 피해를 지속, 강화합니다.

가해자는 끈질기게 피해자의 일상활동이 이뤄지는 공간(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자녀의 학교나 학원, 그 밖의 SNS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폭력을 지속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는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보셨습니까? 가정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위협, 통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별거, 이혼 등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해체된 이후,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나 지인을 대상으로 보복 목적의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¹⁾
-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는 평소 행해지던 가해자의 폭력과 협박 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될 위험이 커집니다.²⁾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와 통제 아래 두려는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피해자가 자신을 벗어나려 한다고 느낄 때 폭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1) 대검찰청, 2017,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 보호 강화 방안 연구

2) Campbell, J. C., 1996, Risk factors for homicide in violent intimate relationships,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Funded Research; DeKeseredy, W. S., & Schwartz, M. D., 2009, Dangerous exits: Escaping abusive relationships in rural America,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사례

1 | 2018년 강서구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사건³⁾

“...지난 22일 오전,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전남편 A씨였는데요. 3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거처와 동선을 파악하고, 가발을 쓰고 있다가 계획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혼으로도 A씨의 폭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지속해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니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여러 차례 이사를 하고 딸들과의 왕래도 삼갔지만, 그때마다 A씨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냈고 그때마다 또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사례

2 | 2019년 거제 흥기 살해범⁴⁾

“9일 오전 6시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20층 옥상에서 15시간째 경찰과 대치를 이어오던 박모씨(45)는 아파트 밑으로 투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박씨는 전날 오후 2시17분쯤 이 아파트 1층에서 상가 입주업체 사장 A씨(57)를 흥기로 수차례 찔렀고, 이후 20층 옥상으로 달아났다가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숨진 A씨는 박씨의 전부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었다. 박씨와 전 부인은 지난 1999년 결혼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박씨는 가정폭력을 행사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혐의이혼했다. 이혼 후 박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 부인의 회사에 찾아가는 일을 몇 차례나 반복했고, 이에 시달리던 박씨의 전 부인은 지난 5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다.

3) <https://blog.naver.com/naverlaw/221388794716>

4)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244705e4b0cfb595fb4526?utm_id=naver

- 가해자는 집요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자녀의 학교나 학원, 그 밖에 SNS 등 피해자의 일상 활동이 이뤄지는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폭력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가정 폭력 피해의 지속과 강화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 신변 노출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회복은 지연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인 피해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과 신체화 반응, 잦은 주거지 이전과 자녀 전학 등으로 인한 삶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 경험으로 불안, 우울, 자기 비난 등의 부정적 감정과 섭식장애, 만성 두통, 불면 등의 신체화 반응을 경험합니다. 신변 노출로 인해 폭력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로 인한 대인관계의 불신은 이러한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엄청 불안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 가지고, 헤에, 내가 여기서 발각되면은, 허억, 나는 갈 데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엄청 불안한 거예요. [경찰이 남편에게] 말을 해버리니까. 왜 말을 하냐고, 그 말을. 모른다고 무조건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⁵⁾

“사실은...저...는 남편이 좀 무서워요(...) 처벌이 된다고 해도 사실 무서울 것 같아요. (...)처벌돼서 나오면 또 만날 건데, 그러면 더 무서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가끔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추적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⁶⁾

- 신변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주거지와 직장을 반복적으로 옮겨 다니거나 자녀를 전학 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경제적 지원과 자녀 돌봄의 조력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은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듭니다.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142, 153,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6) 상동

-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부모, 형제, 친구, 직장동료 등을 지속해서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고 지인들과 연락을 단절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심화됩니다.
- 즉,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는 피해가 지속,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거 물품배송지까지 추적하여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그러므로 기관 종사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과 여성가족부 등 주무 부처에서는 가명 조서 작성, 위치 확인장치 교부, 거주지 이전 비용 지원, 임시숙소 등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피의자, 피고인 등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남성은 당시 12살이던 딸을 4년 동안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이의신청을 한다며, 법원에 사건 자료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쉼터 주소 등이 적힌 사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대표) : “아버지(가해자)는 학교로 찾아갔고요. 노출된 아이(피해자)들은 바로 그날 즉시 집도 챙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30대 여성의 경우도 쉼터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남편에게 노출됐습니다. 남편의 느닷없는 협박 전화를 받은 피해 여성은 공포에 떨었고 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대표) : “한 명의 가해자가 연락하면 (보호 시설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통을 받거든요.”⁷⁾

7) 본문 및 인터뷰 출처: <http://mn.kbs.co.kr/news/view.do?ncd=3204515>

-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자녀의 학교와 학원 소재지, 피해자가 신청한 물품의 배송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집요하게 파악하려 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처에 있는 만큼,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취급하고 대면하는 기관의 종사자 모두가 신변 보호 필요성과 개인정보 노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나도 모르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이미 공개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배려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적으로 요구됩니다.

가. 누구에게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입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는 배려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 1994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의 보호 의무 규정
- 2001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가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까지 확대
-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정보 주체의 권리와 보호의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고 벌칙 조항 강화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는 단지 타인에 대한 배려인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법적인 의무입니다.

- 가정폭력 가해자는 수사 및 소송기록, 주민등록열람표, 자녀의 학교나 쉼터의 위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폭력을 지속해서 행사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피해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만이 개인정보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수사나 피해자에 대한 의료, 복지, 주거 지원, 그리고 주민등록 및 세금 납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심지어 그 기관의 소재지조차 피해자의 신변을 특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일(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등

관련 법령 조문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면서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이메일 및 SNS 계정 접근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도처에 있습니다.⁹⁾ 하지만 구직, 자격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으며, 설사 그러하더라도 완벽한 구제책이 되기 어렵습니다.¹⁰⁾
-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적으로 요구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사업자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등 민간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사용 유효기간, 이용내역, 열람 청구의 범위와 요건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피해자의 신변안전과 가정폭력 피해 예방, 피해자의 일상적 삶의 회복 역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¹¹⁾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2차 피해를 일으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무심코 한 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관점과 입장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차 피해’란, 폭력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거나 피해자 스스로 밝혔을 때 주변인과 지원(사회)체계가 도리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의심하거나 무시 또는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시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Laing(2017)의 연구¹²⁾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63%가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함.
- 담당자가 무심코 한 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과도하게 사건에 관심을 두고 질문하기, 피해자 같지 않다는 등 행실을 의심하기,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행위(“애들 아빠를 신고하다니.”, “이 정도는 경찰 부를 일이 아니고 더한 사람들도 그냥 참고 산다.”)는 결국 피해자를 다시 폭력피해 상황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 담당자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민감성 없이 대응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폭력가정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는 대부분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축소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하는 등 가해자를 대변하는 것도 2차 피해입니다.
 - 의도된 것이 아님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폭력피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자식들을 생각했으면 진즉 이혼했어야지.”, “어떻게 애를 두고 나와.”)도 2차 피해입니다.

11) 참고문헌

-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매뉴얼(2013). 여성가족부
- 평등한 대학 만들기: 성희롱·성폭력 대응 가이드북(2019).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2018). 한국여성의전화

12) Laing, L. (2017). Secondary victimization: Domestic violence survivors navigating the Family Law System. Violence Against Women, 23(11), 1314-1335.

9) <https://www.welivesecurity.com/2013/11/07/how-can-domestic-violence-survivors-protect-their-privacy/>

10) <https://www.techsafety.org/privacymatters>

나.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2차 피해를 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젠 다르게 생각해 주세요!

“부부들은 다 그러면서 살아,
가정폭력은 부부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랑싸움이야.”



- 이런 말은 가정폭력의 문제를 축소합니다.
- 가정폭력은 평등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이나 싸움, 의견의 조율과정과는 다른 불평등한 관계에서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언어, 정서, 성적, 경제적, 신체적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나 그래.”



- 가정폭력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배경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요즘 맞고 사는 여자가 어딴?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어.”
“맞고 사는 사람도 정상은 아니다,
뭔가 아쉬운 게 있거나 약점이 잡혔으니까 맞고 사는 거 아냐?”



-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겨난 편견입니다.
-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떠나지 못함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술이 원수지, 돈 잘 벌 때는 안 그랬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회사에서는 안 그러는데?”
“피해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때려서라도 고쳐서 데리고 살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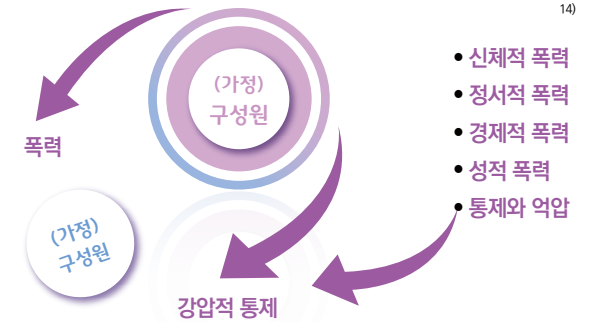


- 이런 말은 폭력행위를 축소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말입니다.
- 가정폭력 가해자 중 많은 경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사람과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 일반인들의 예상과 달리 가해자는 친절한 친구, 성실히 일하는 동료, 혹은 가정밖에 모르는 선후배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다. 가정폭력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¹³⁾

13)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14)

- 보이지 않는 정서적 폭력과 통제 또한 심각한 가정폭력이므로 신체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피해를 축소하거나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통제'는 가해자가 원하는 행동을 강요하기 위해 피해자의 모든 일상에 관여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화 통화나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감시하고, 친구나 가족 등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 (은폐성) 가정폭력은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 가정폭력을 사적 영역으로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일반폭력과 달리 신고도 어렵고, 주변(친척, 지인, 경찰 등)의 개입도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은폐될 수 있습니다.

☞ (지속성) 가정폭력은 반복되고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인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이유로 신고나 고소, 고발도 어려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폭력피해를 10년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함.¹⁵⁾
-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강도가 점점 세계 나타날 수 있습니다.

14) 가정폭력 예방교육 표준교육강의안(201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5) 가정폭력 예방교육 표준교육강의안(201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중복성) 가정폭력 피해는 중복적으로 나타납니다.

- 가정폭력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중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 ✖ 때리기, 목 조르기, 머리채 잡기, 칼이나 위험한 물건 이용한 폭행
- ✖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등

정서적 폭력

- ✖ 욕설, 폭언, 비난, 무시하기
- ✖ 근거 없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괴롭히는 행위
- ✖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애완동물을 학대
- ✖ 피해자가 아끼는 물건을 부수는 행위
- ✖ 원가족(처가 등) 비난과 위협 행위

경제적 폭력

- ✖ 경제활동을 강요하거나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 ✖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행위
- ✖ 피해자의 모든 지출을 통제하거나 월급, 생활비를 가로채는 행위

성적 폭력

-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 ✖ 피임·임신·출산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통제와 억압

- ✖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행위
- ✖ GP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위치추적이나 영상통화, 전화 또는 개인 메일 확인 등의 감시
- ✖ 외부와의 고립, 사회적 관계들을 차단하거나 단절시키는 행위

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약속합니다.

① 가정폭력 피해자의 관점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피해자가 폭력 사실을 알리고 대응하는 과정(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변인·전문가들의 도우려는 선한 의도가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자의 관점과 감정을 우선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억압으로 작용합니다. 가해자로부터의 1차 피해, 주변 환경으로부터 2차 피해를 경험하면서 피해자의 탈(脫)폭력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 친구, 동료, 교사, 사회복지시설 활동가, 법체계 및 경찰체계 담당자,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③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피해자에게는 안전과 회복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이며, 폭력피해자는 안전과 회복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며, 우리의 역할입니다.

II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제도¹⁶⁾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은 교육장 학교 지정 전학으로 가능합니다.

가.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16)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www.easylaw.go.kr>, '서울시 교육청' 운영방침 참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의6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나. 내 용

-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장 학교 지정 전학(학습권 보호 전학)으로 전학 가능 (초·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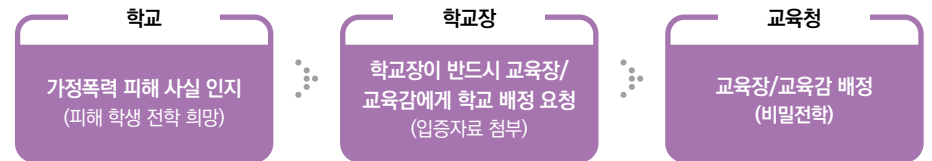
다. 신청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정구성원

라. 처리기관

- 초·중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 교육청
- ※ 타 시도로 전학 시 전입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만 접수 가능

마. 신청방법



바. 제출서류¹⁷⁾

- 학교장 의견서(담임교사가 서명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가정폭력 피해자 증빙서류(택일)
 -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17) 지자체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지자체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침 확인 필요

사례로 알려주는 tip

사례 1 비밀전학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임을 이유로 전학을 거부한 사례

A지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피해 학생이 엄마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교육청에 B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로의 전학을 문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B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로 개별 문의를 권고했습니다.

- ➔ 보호시설 상담원이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원 파악 후 전학이 가능한 학교로 '가정폭력 피해 학생 비밀 전학'을 문의하였으나, C고등학교는 가정폭력 피해 학생은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D고등학교는 정원이 다 찼다며 전학을 거절했습니다.
- ➔ 가정폭력 피해자인 학생과 엄마는 보호시설에 2주 정도 입소해 있다가 학업 유지를 위해 결국 퇴소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학교 정원 내·외 인원의 허용 기준 제한이 없어, 정원이 없어도 우선 전학이 가능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피해 아동 전학을 요청할 때,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비밀전학이 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은 가해 부모에 의해 심각한 폭력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서울시 교육청' 운영방침 주요 참조

사례로 알려주는 tip

사례 2 비밀전학을 위해 피해 사실확인서 외 불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

피해자 E씨가 보호시설로 긴급히 피신 후 자녀의 비밀전학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전학 담당자가 피해 아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사유서와 현재 입소한 보호시설의 주소, 고유번호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E씨가 보호시설 위치 노출 위험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교육청 전학 담당자는 그렇다면 전학서류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전학 처리를 거부하지 마세요.

-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로 비밀전학 처리가 가능합니다.
- * 예) 친권자(가해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전입 신고할 수 없음에 대한 사유서, 보호시설의 고유번호증(기관 주소, 연락처 등) 등

2. 비밀전학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¹⁸⁾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비밀전학을 할 경우, 가해자(친권자 등)에게 아동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가. 법적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비공개 관리 감독 의무

-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아동의 주소지 외의 학교로 입학·전학 등의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학교 관계자들의 부주의, 실수 등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아동의 비밀전학 신청 시부터 전학 학교명 등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
 - 해당 아동의 '전학 처리 관련 서류' 등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또는 '개인정보 노출 주의'를 기재·관리
 -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리

다. 피해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 사실 누설 금지 의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가정폭력 가해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전학 간 학교명, 주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아동의 거주지·입소 보호시설, 연락처 등

18)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www.easylaw.go.kr> 참조

라.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개인정보(비밀전학 등) 유출 시, 관계 법령¹⁹⁾에 따라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로 알려주는 tip

사례 1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신상정보를 노출한 사례

자녀에게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을 행한 가해자(아버지)는 자녀가 비밀전학 전 다녔던 A초등학교에 관련 서류를 들고 매일 찾아와, 자신이 보호자라며 피해 아동이 전학 간 초등학교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가해자의 집요한 요구에 결국 A초등학교 담당자가 피해 아동이 비밀전학한 B 초등학교를 알려주었습니다.

중요

가해자가 친권자라도 피해 아동의 전학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 친권자(부모)에게도 피해 아동의 전학·편입 사실 등에 대한 비밀엄수

- ① 가해자 또는 학대 행위자가 친권자 자격으로 전학 학교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피해아동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③ 피해 아동의 전학 정보 제공 거부를 이유로 가해자 또는 학대 행위자가 학교장, 담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9)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3.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²⁰⁾

주민등록 관계법령 개정(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신설)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나. 내 용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 신청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보호시설장, 직원 등의 요청을 받아 읍·면·동 사실조사)

라. 처리기관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마. 신청서류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제한, 해제) 신청서(필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필수)
- 첨부서류(택일)

-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 ☞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사실·입소확인서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실확인서

☞ 입증자료

-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진단서도 가능)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
- ☞ 임시보호명령결정서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등·초본
-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밑줄친 부분 추가(2019.11.19.)

20)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참조

Tip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발급제한 대상자'에 피해자의 가족* 중 가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

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주소지 등) 유출 시, 관련 법령²¹⁾에 따라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로 알려주는 tip

사례 1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컴퓨터에서 피해자 정보를 조회, 노출한 사례

가해자 A씨는 이혼 후 재산세 납부 청구서를 사유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B씨는 가해자 A씨 옆 민원인 컴퓨터에서 피해자 C씨의 정보를 조회했고, 가해자 A씨는 민원인 컴퓨터에 노출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피해자 C씨를 찾아갔습니다.

중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표시를 확인할 경우, 교부제한자에게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사례로 알려주는 tip

사례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실이 접수되자 담당 공무원이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즉각 알려 노출된 사례

D구청 담당자는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한신청이 들어오자, 바로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했습니다. 가해자는 서면을 받고 피해자가 D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중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대상자(가해자)가 등·초본 서류 발급을 신청했을 때, 가해자에게 제한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단, 피해자가 교부 제한을 신청한 당시에는 제한대상자(가해자)에게 신청 내용(피해자의 신청으로 등·초본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²²⁾

※ 「주민등록법」 제29조제7항 참고

➔ 대부분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자는 업무 처리 시 피해자의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21)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2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

4.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뒷자리 6자리를 공시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²³⁾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²⁴⁾

-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이혼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상해 등의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이혼 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을 했으나, 전 남편이 피해자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인터넷쇼핑 구매 기록 및 주소지를 확인하여 피해자 A씨를 계속 찾아와 협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지속적인 신변 노출에 피해자 A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신청인 A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추후 생명·신체의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제1항제3호의 변경 요건에 해당, 신청인 A씨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청구를 인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가.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나. 내 용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 [참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현황 (2019. 11. 8. 기준)

· 2017.5.30.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접수 1,892건 중 가정폭력·성폭력,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피해로 신청한 경우는 509건(26.9%)으로 보이스피싱(27.1%)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 신분도용(22.7%), 기타(23.3%)*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스미싱, 해킹, 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2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http://www.rmcc.go.kr/> Tel. 02-2100-4059-4065 참조

24)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 참조

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 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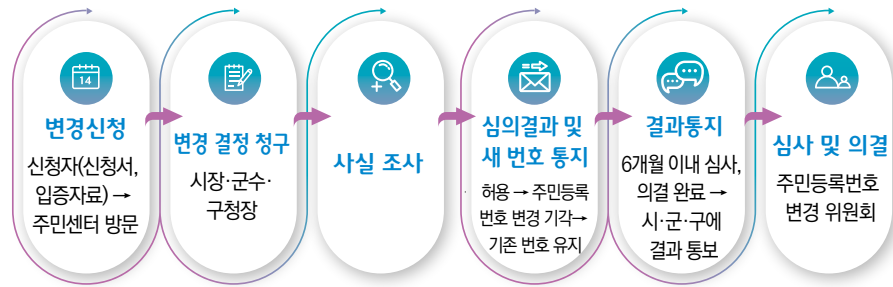
라.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마.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바. 처리절차



※ 기각(주민등록번호 유지) 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사. 신청서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택일)

| 구분 | 입증자료 | 발급기관 |
|----------|---------------------------------|-------------------|
| 가정폭력 피해자 | ·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 · 가정폭력상담소 |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 · 여성긴급전화1366 |
| | · 진단서, 진료기록 | · 진료병원 |
| | · 수사기관 사건(고소, 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 · 해당 수사기관(검찰, 경찰) |
| | · 판결문, 공판기록 | · 법원 |

※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진단서도 가능

사례로 알려주는 tip

사례 1

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²⁵⁾

가정폭력 피해자 B씨는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B씨에 대한 폭행 등으로 복역 중인 아버지의 출소 이후 보복 등 피해를 우려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신청인 B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추후 생명·신체의 위해 우려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 요건에 해당, 신청인 A씨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청구를 인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요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25)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 참조

(2)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²⁶⁾ (2018.11.16. 시행)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신청

- 미혼의 발달장애 3급 피해자 C씨는 아버지(가해자)의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버지(가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탕진해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후 공시제한을 신청했습니다.

가. 법적 근거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

제2조 (공시제한 등 신청)

①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이하 “비공시 대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내 용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또는 변경 신청자

라. 처리기관

-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마. 신청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비공시 대상자)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한 경우, 신청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바. 신청서류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서

Tip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비공시 대상자’에 가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예) 가해자, 가해자의 직계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자손 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등

사례로 알려주는 tip

사례 2

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 D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해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 D씨가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면, 아버지(가해자)가 피해자 D씨를 강제퇴원 시키길 반복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생활했습니다. 작년에 군대 전역 후 취업을 했는데, 아버지(가해자)가 찾아올까 두려워 전입신고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소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신청을 지원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공시제한을 신청했습니다.

중요

배우자, 부모 등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26) 대법원 보도자료(2018.11.15.) 참조

III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1.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계 공무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및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등은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2.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을 정보라서 알려 주었다고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주소지, 피해자 자녀의 전학 및 입학한 학교, 사건 및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관서, 피해 관련 사실 자체도 개인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단서로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정보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정보의 전산 조회 과정 혹은 혼잣말, 동료 직원과의 대화 내용 등도 가해자가 포착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혹은 전학 신청, 수사 중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관서와 관련된 정보를 은연중에 가해자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까? 신청 및 사건 진행이 이뤄진 곳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찰,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한 사례 회의 정보 역시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입니다. 실적보고 및 홍보에도 유의하십시오.

3.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행정 절차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마음대로(임의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사실확인서 혹은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진단서로 충분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은 학교 정원과 무관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전학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그 정보가 알려진 아동이 처할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 법적으로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학교명, 거주지, 입소시설, 연락처 등을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친권자, 보호자라는 것을 주장하며 위협을 한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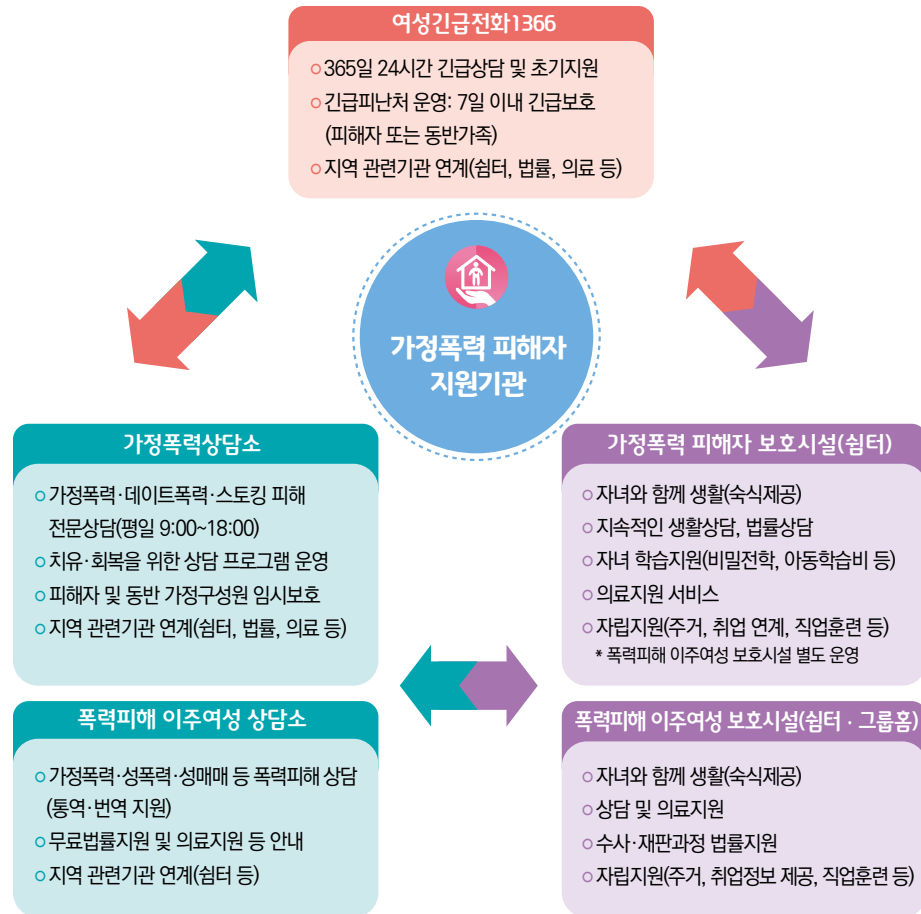
4. 피해자를 돕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제한을 신청할 때, '제한 대상자'가 가해자에 국한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가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가족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피해자 지원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기관명 | 주요기능 | 전화번호 |
|-------------|---|---------------------|
| 여성긴급전화 1366 | 폭력피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 1366 (지역번호+1366) |
| 가정폭력상담소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시설향기) http://www.mogef.go.kr/inc/fs_fsc_s003.do?mid=fsc300 | 전국 상담소 연락처 (사이트 참고) |

붙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붙임

관련 법령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제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아동의 취학 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아동의 취학 지원)

-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11. 4. 1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 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 4. 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8. 13.]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2019. 2. 8., 2019. 11. 19.>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전문개정 2016. 12. 30.]

3.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제도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공시제한 등 신청)

- ①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이하 “비공시 대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 후에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인)

-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은 신청사건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 ② 신청사건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의 제출)

-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시제한 또는 비공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 2.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 ② 신청인은 전항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시제한)

-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교부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전부 공개 또는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을 한 경우라도, 발급·교부 신청인이 비공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 * * * *) 발급·교부한다.
 - 1.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교부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2. 교부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 ②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인증 없는 사본 교부 시, 이해관계인이 비공시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기재된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비실명처리(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인증 없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비실명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추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신나래 전문위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교육지원팀

본 안내서는 행정안전부(주민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여성긴급전화1366전국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 사전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서

- **발행인** 박봉정숙
-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 **발행처**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주소** (04505)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TEL • 02-6363-8442 FAX • 02-6363-8494
- **홈페이지** <https://www.stop.or.kr/>
- **등록번호** 여성인권-단행본-2019-3
- **디자인·인쇄**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TEL • 02-6948-9650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1366 중앙센터 운영)

전문상담원과 1:1 실시간 채팅,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www.women1366.kr

카카오톡 검색창. [women1366](https://open.kakao.com/o/1366)

